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제난 상황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 및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라는 정부혁신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실과 혁신조직국을 디지털정부혁신실과 조직국으로 개편하면서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며,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마약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2명, 연구사 3명) 및 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 감정·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광주센터 사이버보안 담당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각 부처 정보시스템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인력 1명(6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인력 1명(8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1명(8급 1명) 및 농촌진흥청 인력 1명(8급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잠재재난위험

분석센터를 신설하고 위험요소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연구사 1명) 및 소하천 홍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부서명칭 일부를 변경하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국가기록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및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제16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디지털정부실)”을 “(디지털정부혁신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디지털정부실장”을 “디지털정부혁신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디지털정부정책국장·공공데이터국장”을 “디지털정부정책국장·정부혁신국장·공공데이터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3항 중 “디지털 기반정책과·디지털안전정책과”를 “디지털기반안전과·디지털보안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기반정책과장”을 “디지털기반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을 “디지털보안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정부혁신국에 혁신기획과·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5.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6.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7.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평가
 9. 정부혁신 관련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및 교육·홍보
 4.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5.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6.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7.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관리 및 사례분석·전파
9.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0.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2.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3.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5.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16.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17.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8.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9.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1.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2.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23. 지방자치단체 행정사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감독
 24.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3.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4.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5.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개선
 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고시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1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
 13.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서식·관인·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15.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등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
한 기획·홍보
16.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제도화 연구
17.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 운영 모델의 개발 및 사업 발굴 추진
18.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 한다) 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19.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의 발굴·관리 및 교육·홍보
20. 공공서비스 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21.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22. 공공서비스 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보급
23.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
한 사항
24. 공공서비스 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25.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26.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27.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28.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29.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30.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운
영

제9조제21항(중전의 제16항)에 제28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9.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0.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기준·절
차의 수립·시행
31.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 32.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 33.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
반 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 34.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품
질관리
- 35.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 36.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
련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혁신조직국)”을 “(조직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혁신조직국장”을 “조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혁신조직국에 혁신기획과·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정보공개과·조
직기획과”를 “조직국에 조직기획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
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0호 중 “시·도지사회의 개최”를 “중앙지방협력회의”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 “지역활성화과·기업협력지원과”을 “지역청년정책
과·기업협력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활
성화과장”을 “지역청년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 8.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 9.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 9의2.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9의3.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창출 및 실업해소대책의 지원

제12조제14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
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6.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 7.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8조제9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2호
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항제4호를 삭제한다.

- 6의2.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제8항제14호 중 “문화재 시설 사고”를 “문화유산 관련 사고”로
한다.

제50조제10항 후단 중 “6명”을 “7명”로 한다.

제5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1,643”을 “1,648”로 하고, 일반직 계 “1,601”을 “1,606”으

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7”을 “39”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8”을 “169”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0”을 “203”으로, 행정서기 “14”를 “13”으로, 행정서기보 “12”를 “1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47”을 “1,652”로 하고, 일반직 계 “1,605”를 “1,61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7”을 “39”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8”을 “169”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0”을 “203”으로, 행정서기 “15”를 “14”로, 행정서기보 “12”를 “1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2의3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3”으로, 기계운영서기보 “5”를 “3”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3”으로, 기계운영서기보 “5”를 “3”으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0”을 “11”로, 전기운영주사보 “3”을 “2”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을 “12”로, 전기운영주사보 “3”을 “2”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453”을 “459”로 하고, 일반직 계 “444”를 “45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02”를 “408”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324”를 “329”로 하고, 일반직 계 “324”를 “32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0”을 “325”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88”을 “91”로 하고, 일반직 계 “88”을 “9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7”을 “90”으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8항제14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6조 관련)

1. 제56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2. 제56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2

3. 제56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⑦ (생략)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5. (생략) 16.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17. ~ 19. (생략) ⑨ ~ ⑬ (생략)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1. ~ 15. (현행과 같음) <삭 제> 17. ~ 19. (현행과 같음)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9조(디지털정부실) ① 디지털정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디지털정부정책국장 · 공공데이터국장 및 공공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디지털정부정책국에 디지털정부기획과 · 디지털기반정책과 · 디지털안전정책과 및 국제디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① 디지털정부혁신실장----- ----- ----- -----. ② 디지털정부정책국장 · 정부혁신국장 · 공공데이터국장 --- ----- ----- ----- ---. ③ ----- -----디지털기반안전과 · 디지털보안정책과 -----

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	이력·품질관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9.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삭 제>
⑤ 디지털기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디지털기반안전과장----- -----.	20.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⑥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디지털보안정책과장----- -----.
1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삭 제>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13.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14.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기준·절차의 수립·시행	<삭 제>	<신 설>	⑧ 정부혁신국에 혁신기획과·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5.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삭 제>	<신 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삭 제>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7.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삭 제>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18.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삭 제>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신 설>

4.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 · 선정
5.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 사례 발굴 · 확산
6.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7.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 · 협력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 · 점검 및 성과 관리 · 평가
9. 정부혁신 관련 국가 ·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 · 개선 · 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 · 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 개선 및 교육 · 홍보
4.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5.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 · 시행
6.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7.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 · 관리 및 사례분석 · 전파
9.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0.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 ·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지식행정제도의 연구 · 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2. 행정기관 · 민간부문 · 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3.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5.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16.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17.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8.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9.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1.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2.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23. 지방자치단체 행정사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감독
24.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신 설>

-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3.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4.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5.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개선
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고시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신 설>

- 1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
- 13.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4.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조정
 -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운영
 -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
 -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

- 보고에 관한 사항
-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13. 문서·서식·관인·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 15.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등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홍보
- 16.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제도화 연구
- 17.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 운영 모델의 개발 및 사업 발굴 추진
- 18.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 한다) 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 19.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발굴·관리 및 교육·홍보

⑧ ~ ⑮ (생 략)

- 20. 공공서비스 디자인 관련 민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21.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
선
- 22. 공공서비스 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보급
- 23.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
화에 관한 사항
- 24. 공공서비스 디자인단의 운
영 지원
- 25.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
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 26.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
후 관리
- 27.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
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28.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
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 29.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
· 운영
- 30.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

⑬ ~ ⑳ (현행 제8항부터 제15

⑯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2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항까지와 같음)

㉑ -----
-----.

1. ~ 27. (현행과 같음)

28.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
의 수립·시행 및 평가

29.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0.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
기준·절차의 수립·시행

31.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
화

32.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
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
사

33.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시행

34.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
축·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품질관리

35.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
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9. 정부혁신 관련 국가·지방공
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⑥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
· 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
례의 발굴·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및 교육·홍보
4.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5.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
립·시행
6.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
에 대한 실태 점검
7.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
원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
제 발굴·관리 및 사례분석·

<삭 제>

- 전과
9.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
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
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0.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
유·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2.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
크 구축 및 운영
13.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5.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
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
항
16.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
획의 수립·추진
17.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8.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
에 관한 사항

19.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1.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2.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23. 지방자치단체 행정사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감독
24.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 ⑦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3.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4.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5.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개선

<삭 제>

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고시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1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
13.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 ⑧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삭 제>

-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
템의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
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개
선권고 및 시정요구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개
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
·개선 및 확산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서식·관인·업무편
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
관 업무의 운영 지원

15.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의 수립 등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홍보
16.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
화에 관한 제도화 연구
17.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
화 운영 모델의 개발 및 사업
발굴 추진
18.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공
공서비스 디자인”이라 한다)
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19.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의
발굴·관리 및 교육·홍보
20. 공공서비스 디자인 관련 민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21.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
선
22. 공공서비스 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보급
23.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
화에 관한 사항
24. 공공서비스 디자인단의 운
영 지원

25.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26.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27.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28.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29.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30.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	
⑨ ~ ⑬ (생략)	③ ~ ⑦ (현행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제11조(지방행정국) ①·② (생략)	제11조(지방행정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시·도지사회의 개최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10. 중앙지방협력회의 ----- -----
11. ~ 23. (생략)	11. ~ 2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①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균형발전지원국에 균형발전제도과·균형발전진흥과·지역활성화과·기업협력지원과 및 주소생활공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지역 청년정책과·기업협력지원과-----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지역청년정책과장-----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삭제> 8.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8. (생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9.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9.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 창출 총괄 지원
<신설>	9의2.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신설>	9의3.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창출 및 실업해소대책의 지원
10. ~ 16. (생략)	10. ~ 16. (현행과 같음)
17. 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 개선	<삭제>
18. (생략)	18.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 ~ ⑬ (생 략)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u>	6. <u>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u> 에 관한 사항
7. <u>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u>	7. <u>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u> 에 관한 사항
8. <u>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상황 지도·점검 및 평가</u>	<삭 제>
9. <u>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u>	<삭 제>
10. <u>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창출 및 실업해소대책의 지원</u>	<삭 제>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⑮ ~ ⑱ (생 략)	⑮ ~ ⑱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 ~ ⑧ (생 략)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u>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u>
7. ~ 28. (생 략)	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 28.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삭 제>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⑫・⑬ (생 략)	⑫・⑬ (현행과 같음)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u>	<삭 제>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⑮・⑯ (생 략)	⑮・⑯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① ~ ⑦ (생 략)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u>정보통신 사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재난, 법무 시설 재난 및 사고, 정부중요 시설 사고,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문화재 시설 사고, 접경 지역 사고, 인공우주물체·위</u>	14. ----- ----- ----- ----- ---- <u>문화유산 관련 사고</u> ---- -----

성 등의 추락·충돌, 테러(이하 “정보통신 사고등 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 ----- ----- ----- -----
15. ~ 23. (생략)	15. ~ 23. (현행과 같음)
⑨ ~ ⑫ (생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생략)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⑩ ----- ----- ----- ----- ----- 7명을 ----- ----- ----- ----- ----- ----- ----- ----- ----- ----- -----
⑪ (생략)	⑪ (현행과 같음)
제56조(한시정원) ① (생략)	제56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

③ (생략)	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43</u>	<u>1,648</u>	+5
·	·	·	
·	·	·	
일반직 계	<u>1,601</u>	<u>1,606</u>	+5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7</u>	<u>39</u>	+2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8</u>	<u>169</u>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0</u>	<u>203</u>	+3
·	·	·	
·	·	·	
행정서기	<u>14</u>	<u>13</u>	-1
·			
행정서기보	<u>12</u>	<u>1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0</u>	<u>9</u>	-1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47</u>	<u>1,652</u>	+5
·	·	·	
·	·	·	
일반직 계	<u>1,605</u>	<u>1,610</u>	+5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7</u>	<u>39</u>	+2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8</u>	<u>169</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0</u>	<u>203</u>	+3
·	·	·	
·	·	·	
행정서기	<u>15</u>	<u>14</u>	-1
·			
행정서기보	<u>12</u>	<u>1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0</u>	<u>9</u>	-1
·	·	·	
·	·	·	

[별표 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u>	<u>3</u>	+2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5</u>	<u>3</u>	-2
·	·	·	
·	·	·	

[별표 4의2]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u>	<u>3</u>	+2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5</u>	<u>3</u>	-2
·	·	·	
·	·	·	

[별표 5]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0</u>	<u>11</u>	+1
•	•	•	
•	•	•	
전기운영주사보	<u>3</u>	<u>2</u>	-1
•	•	•	
•	•	•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1</u>	<u>12</u>	+1
•	•	•	
•	•	•	
전기운영주사보	<u>3</u>	<u>2</u>	-1
•	•	•	
•	•	•	

[별표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53</u>	<u>459</u>	+6
일반직 계	<u>444</u>	<u>450</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02</u>	<u>408</u>	+6
·	·	·	
·	·	·	

[별표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4</u>	<u>329</u>	+5
일반직 계	<u>324</u>	<u>329</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0</u>	<u>325</u>	+5

[별표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8</u>	<u>91</u>	+3
일반직 계	<u>88</u>	<u>91</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7</u>	<u>90</u>	+3